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-30호

「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3월 18일

###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#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 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대전광역시 학생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함(안 제3조).
- 나.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.
- 다. 진로진학지원센터, 학교진로활동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- 라. 직업체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.
- 마.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4조).

#### 3. 의견제출

- 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교육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 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주소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02-789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(전화 042-270-5243, FAX 042-270-5249, E-mail : bokdung@edurang.net)
- 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##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생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진로교육"이란 자신의 소질·적성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, 진로상담, 직업체험, 진로정보 제공 등의 활동 을 말한다.
  - 2.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제3조(진로교육의 기본방향)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.
  - ② 모든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-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  - ④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.
- 제4조(교육감의 책무) ①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진로 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③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진로교육기본계획)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 다.

- 1. 진로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
- 2. 진로교육 홍보
- 3.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
- 4.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6조(진로교육시행계획) 학교의 장은 진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진 로교육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7조(진로교육 평가) 교육감은 제6조의 진로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지원시 반영할 수 있다.
- 제8조(진로진학상담교사 등)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중·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진로교육을 보조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- 제9조(진로진학지원센터 등) ① 교육감은 학생, 학부모, 교원들에게 다양한 진로진학정보 및 진로진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 청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둔다.
  - ② 교육감은 학생, 학부모에게 진로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등에 제1항의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연계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.
  - ③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연계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- 제10조(학교진로활동실 등) ①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내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구축하여 학교진로활동실을 운영할 수있다.
  - ② 교육감은 학생의 전문적 진로체험 활동 지원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전문학과 등에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.
- 제11조(직업체험기관 지정) 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, 대학, 민간기업,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- 제12조(연구학교 지정·운영)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교원연수 등)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로진학 상담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에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.
- 제14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, 교육지원청, 지방자치단체, 언론 및 진로교육 기관·단체 등과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관·단체 등이 참여하는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·운 영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 령

## ●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14.4.29] [법률 제12338호, 2014.1.28., 일부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 ·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- 1. 초등학교 · 공민학교
- 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- 3. 고등학교 · 고등기술학교
- 4. 특수학교
- 5. 각종학교